

규정류(제정·개정)입안서

1. 규정류명 : 비전임교원 인사규정
2. 규정류(제정·개정)사유:
 - 교육부령 「명예교수 규칙」이 2025년 9월 17일 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본 대학교의 비전임교원 인사규정 중 명예교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명예직의 성격, 위촉절차의 객관성 확보, 활동 범위 명확화 등을 반영하여, 「명예교수 규칙(교육부령)」의 취지를 준용하고 타 대학 사례를 참고하여 정비
 - 특히 “종신” 또는 임기 제한 없는 위촉 조항을 총 5년 이내 제한으로 명확히 조정할 필요가 있음.
3. 주요내용
 - 제9조(자격) 명예교수의 자격 요건 구체화 및 총장의 추천 절차 명시
 - 제10조(추대) 위촉 절차, 임기 및 재위촉 요건 명문화
 - 제11조(처우) 최초 3년, 1회 재위촉(2년)으로 총 5년으로 제한
4. 시행예정일 또는 요청일 : 공포일로부터 시행
5. 참고사항
 - 가. 관련규정: 명예교수 규칙(교육부령)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관련부서: 해당사항 없음
6. 첨부사항
 - 가. 신·구조문 대비표(개정 시) 1부.
 - 나. 규정류(제정·개정)안 전문 1부.

2026년 1월 일

소관부서 : 교무처 (인)

관련부서 : (인)

신·구조문대비표

규정명: 비전임교원 인사규정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제1조 ~ 제8조(생략)</p> <p>제9조(자격) ① 명예교수는 본 대학교에서 정년퇴임한 교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p> <p>1. 본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휴직기간은 제외)</p> <p>2. 본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재직 중 교육, 연구 및 봉사업적이 뛰어나고 대학의 발전에 계속 기여할 수 있는 사람</p> <p>② 본 대학교 발전을 위해 공헌하였거나 향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서 총장이 추천하는 사람</p> <p>제10조(추대) 명예교수는 해당학과 또는 총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추대한다.</p> <p>제11조(처우) ① 명예교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며 추대기간은 종신으로 한다.</p> <p>② 명예교수가 강의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소정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p> <p>③ 명예교수에게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p>	<p>제1조 ~ 제8조(현행과 같음)</p> <p>제9조(자격) 명예교수는 본 대학교에서 정년퇴직한 전임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p> <p>1. 본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25년 이상 재직하고, 교육, 학문 및 사회에 공적이 크며 대학 발전에 기여한 사람</p> <p>2. 본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15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사람 중 교육 및 학문 분야에서의 공적이 뛰어나고 퇴직 후에도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총장이 특별히 추천하는 사람</p> <p>제10조(추대 및 위촉 절차) ① 명예교수의 위촉은 해당 학과장의 추천과 총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위촉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학과장의 추천은 소속 학과 전임교원 전원의 서면 동의를 얻어 진행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이 직접 추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p> <p>1. 소속 학과의 전임교원이 3인 미만인 경우</p> <p>2. 학교 발전에 탁월한 공로가 있어 총장이 특별히 추천하는 경우</p> <p>④ 교원인사위원회는 추천된 자에 대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p> <p>제10조의2(임기 및 재위촉) ① 명예교수의 최초 위촉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p> <p>② 재위촉 시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명예교수의 총 임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11조(처우) ①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며, 본 대학교에 대한 법적 또는 고용상 신분은 발생하지 않는다.</p> <p>② 명예교수는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p>	<p>전임교원 15년/25년 재직 등 구체 요건 신설 및 총장 추천 반영</p> <p>총장 추천으로 통일하고 위촉절차 명문화</p> <p>임기, 재임용 제한, 예우, 활동범위 등 통합 정비</p>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p>제11조 ~ 제27조(생략)</p>	<p><u>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u></p> <p><u>1. 전공 분야의 강의 (주당 6시간 이내 원칙)</u></p> <p><u>2. 연구 활동 및 학술행사 자문</u></p> <p><u>3. 대학이 요청하는 기타 교육·연구 관련 활동</u></p> <p><u>③ 총장은 필요 시 명예교수에게 도서관, 연구실 등 교육·연구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u></p> <p><u>제11조의2(준용) 본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명예교수 관련 세부사항은 「명예교수 규칙(교육부령)」의 취지를 준용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u></p> <p>제11조 ~ 제27조(현행과 같음)</p>	<p>「명예교수 규칙」 준용 규정 및 세부사항 총장 정함</p>

비전임교원 인사규정

제정 2024년 2월 29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7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안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3조에 규정된 비전임교원의 임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비전임교원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명예교수 : 장안대학교 전임교원으로 정년퇴직한 교수 및 총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발전에 계속 기여하도록 명예직으로 추대된 사람을 말한다.
- 겸임교수: 국내외 국가기관, 교육 및 연구기관·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내용이 장안대학교에서 담당할 교육 및 연구 내용에 적합하여 교육 및 공동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 초빙교수 : 국내외적으로 학술 연구업적이 탁월하거나 국가 및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특정 교육 또는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장안대학교 또는 외부기관의 재정적 지원으로 장안대학교의 교육 및 연구활동을 위하여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 특임교수 : 교육, 연구, 산업, 과학기술, 경영, 사회, 문화분야 등의 활동이 탁월하여 특정 교육 또는 연구, 문화활동을 수행, 교류하는 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학교발전을 위해 특별히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 산학협력중점교수 :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 취업 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하기 위하여 전일제 근무로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단, 무보수 또는 연구비 등 일부 기타 재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근무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

제3조(임용) ① 비전임 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11에 따라 특별채용절차를 통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공정한 심사를 위해 기초 및 전공심사, 면접심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각 단계를 통합하거나 면접심사를 생략하는 등 임용절차를 간소화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총장은 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④ 비전임교원의 특별채용시 활용하려는 학과장 또는 소속 기관장의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제4조(재임용) ① 비전임교원(명예교수제외)은 1년 단위로 임용하되 필요한 경우 평가를 통해 재임용 할 수 있다.

제5조(퇴직) 비전임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재임용 되지 않는 한 당연히 퇴직된다.

제6조(면직) ① 비전임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임용기간 중이라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거나 면직할 수 있다.

1. 비전임교원 임용과 관련하여 본 대학교에 제출한 서류 중에 허위사실이나 허위서류가 있을 경우
2. 재임용 평가 70점 미만인 경우
3. 본 대학교 설립이념에 부합되지 않고, 비전임교원으로서 품위를 상실하였을 경우
4. 본 대학교 강의 평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하위평점에 해당되었을 경우
6. 학생 정원의 감소로 폐강 또는 폐과 등 교육과정 상 불가피하게 강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7. 담당 교과목 강의를 위해 신규 전임교원을 채용한 경우

제7조(임용기간 등) 비전임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 17조(겸임교원 등)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8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2장 명예교수

제9조(자격) 명예교수는 본 대학교에서 정년퇴직한 전임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본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25년 이상 재직하고, 교육, 학문 및 사회에 공적이 크며 대학 발전에 기여한 사람
2. 본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후 정년퇴직한 사람 중 교육 및 학문 분야에서의 공적이 뛰어나고 퇴직 후에도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총장이 특별히 추천하는 사람

제10조(추대 및 위촉 절차) ① 명예교수의 위촉은 해당 학과장의 추천과 총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과장의 추천은 소속 학과 전임교원 전원의 서면 동의를 얻어 진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이 직접 추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1. 소속 학과의 전임교원이 3인 미만인 경우
2. 학교 발전에 탁월한 공로가 있어 총장이 특별히 추천하는 경우

④ 교원인사위원회는 추천된 자에 대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제10조의2 (임기 및 재위촉) ① 명예교수의 최초 위촉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② 재위촉 시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명예교수의 총 임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처우) ①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며, 본 대학교에 대한 법적 또는 고용상 신분은 발생하지 않는다. ② 명예교수는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1. 전공 분야의 강의 (주당 6시간 이내 원칙)
- 2. 연구 활동 및 학술행사 자문
- 3. 대학이 요청하는 기타 교육·연구 관련 활동

③ 총장은 필요 시 명예교수에게 도서관, 연구실 등 교육·연구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의2(준용) 본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명예교수 관련 세부사항은 「명예교수 규칙(교육부령)」의 취지를 준용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특임교수

제18조(자격) 특임교수의 자격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원자격이 있고 교육, 연구, 산업, 과학기술, 경영, 사회, 문화분야 등의 활동이 탁월하여 특정 교육 또는 연구, 문화활동 수행, 대외교류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9조(임무) ① 특임교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강의 또는 연구
- 2. 학교발전에 관한 자문
- 3. 기타 총장이 특별히 부여하는 사항

제20조(처우) 특임교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임교수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1.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 : 강사료
- 2.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 월정수당

제21조(명칭부여) 특임교수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특정한 명칭을 특임교수 앞에 붙여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임기 및 재임용) ① 특임교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임용할 수 있다.

② 특임교수의 재임용을 위한 평가는 별도의 규정 없이 총장이 결정한다.

제6장 산학협력중점교수

제23조(자격)①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 취업 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하기 위한 사람을 임용한다.

②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의한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박사학위 소지자 등 교육부 장관이 정한 산학협력중점교수인정기준에 따라 경력 기준은 완화될 수 있다.

제24조(직무) ①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주당 책임시수는 산학협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강의시간표 편성 지침에서 정한 책임 시수에서 30% 이상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의 보직임용은 제한하며 그 밖에 복무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제 규정에 따른다.

제25조(처우) ①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경력 산정 방식 및 보수는 계약에 의한다.

② 그 밖에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처우에 관하여는 총장이 결정한다.

제26조(임기 및 재임용) ①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임용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재임용을 위한 평가는 별도의 규정 없이 총장이 결정한다.

제27조(보칙)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